

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

공모 · 심사단 · 지정 · 운영기간 · 사전협의 · 수강료 · 회계 · 평가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1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**지정 절차 및 방법**과 안전위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탁기준)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실시기관(이하 “교육기관”이라 한다)의 **교육시설 및 장비, 교육인력, 교육과정** 등에 관한 위탁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3조(교육기관의 공모 및 신청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에 따른 위탁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을 **공개적으로 모집**할 수 있다.

② ...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공고한 기간 내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신청기관 현황 및 **운영조직 구성**

2. **재정계획**

3. **교육운영계획** — 교육대상자, 강사진 운영,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필요한 **교육비(산출근거 포함)** 등 **예산에 관한 사항**

4. **교육시행규정** — 교육의 목적, 교육과목 및 교재 편찬방법, 교육진행, 강사 및 수강료,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, 교육수료증·발급대장 등 서식, 교육내용·강사·만족도 등 **평가에 관한 사항**

5. **교육시설 구비현황**(시설 및 기자재 등, 대여 포함)

6. **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**

7.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

제4조(교육기관지정심사단 구성·운영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 지정의 **객관성, 공정성 및 전문성**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지정심사단(이하 “심사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심사단은 ... **4명 이상의 위원**으로 구성하여야 하며, **외부위원의 수를 2분의 1 이상**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심사단은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평가표에 따라 **현장조사 등 심사**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심사단은 심사 종료 후 **심사 결과보고서**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교육기관 지정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사결과가 **적합한 경우**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... **지정서를 발급**하여야 한다.

③ ... 교육기관의 **운영 기간은 3년**으로 하며, 운영 기간이 종료한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**교육운영 평가 결과와 운영실적** 등을 참고하여 **재지정 여부**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6조(교육기관의 변경 신청) ① 교육기관의 장은 **교육기관의 장·명칭·소재지**를 변경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**30일 이내**에 변경신청서에 근거서류 및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.

② ... 다만, **소재지 변경**의 경우에는 위탁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**현장조사를 실시**할 수 있다.

제7조(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의 수립 등) ①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**교육**

시행규정을 제정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교육기관의 장은 ... **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**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와 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**미리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**하여야 한다.
-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... **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**를 할 수 있으며, 교육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**지체 없이 시정조치**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교육내용 등) ① 교육기관은 법령·기준규격·위생관리·안전성 확보·표시광고 등 **열한 가지 내용**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**제1항의 교육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은 하지 않아야 한다.**

제11조(수강료)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수준,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**실비수준으로 교육기관의 장이 결정**한다.
- ③ 교육기관의 장은 수강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**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**하여야 한다.

제13조(회계처리) ①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위생교육실시에 따른 수입·지출의 회계처리는 **별도의 계정과목**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수강료 등 수입금은 **안전위생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** 다만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4조(교육기관의 교육운영 평가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운영 평가표에 따라 **연 1회 이상 교육운영 평가**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... 평가 결과 **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**를 취할 수 있다.

부칙

부칙 <제2024-64호, 2024. 10. 17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전위생교육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... 안전위생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**이 고시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.**

부칙 <제2025-67호, 2025. 10. 17.>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※ 이 문서는 고시 본문 조문의 발췌임. 제9조·제10조·제12조·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와 별표·별지 서식은 생략함.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음.